

「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10월 11일

나. 발 의 자 : 김원섭·김민성·김영태·김재우·김정도·박교상·박세채·
신용하·이정희·장미경 의원(10명)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0월 19일

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김 원 섭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매년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요구를 반영한 식단구성의 어려움이 있음.
- 이용단가 인상을 통하여 식단의 질을 높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한 영양을 제공하고, 욕구에 맞는 식단구성을 통하여 만족도를 높이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경로 식당 이용료 인상 : 2,800원 → 3,500원 (안 별표1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 및 제37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10. 12. ~ 10. 17.) 결과 의견 없음.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식당 이용료를 인상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식당 이용료 중 자부담 부분이 아닌, 시 지원금을 높여 어르신 건강을 위해 식단의 질을 높이고, 어르신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식단구성을 통하여 식사 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본 조례안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.
- 다만, 집행부에서는 식사 단가의 상승에 맞추어 식단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향후 급식 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